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2024. 1. 양형위원회

Ⅰ. 개요

▣ 의견조회 및 공개 대상인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등을 소개하여, 이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연혁

- 2011. 3. 21. 설정, 2011. 7. 1. 시행
- 2015. 4. 13. 수정, 2015. 5. 15. 시행
- 2020. 9. 14. 수정, 2020. 10. 15. 시행
- 그 후 수정은 양형기준 전반에 걸친 정비(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 수정 배경

- 미성년자 대상 대마범죄 관련 법률 개정
  - 2023. 3.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 제59조 제1항 제8호를 삭제하고, 동법 제58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2023. 9. 29. 시행)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 범행 법정형 상향(1년↑ → 2년↑)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

1) 이하 ‘마약류관리법’

- 마약범죄의 대량화·조직화·지능화 추세에 따른 양형 강화 요청

-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도 높음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

- 마약류 범죄의 영업범에 관한 특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양형기준 無

▣ 수정 경과

● 2023. 6. 12. 제12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제9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로 의결

● 2023. 9. 18. 제127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 2023. 11. 21. 제128-1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 2024. 1. 18. 제129-1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수정안 의결

● 2024. 1. ~ 2024. 2.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공개

● 2024. 2. 16.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예정

● 2024. 3.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의견 검토 및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

(이하 여백)

2) 이하 '마약거래방지법'

Ⅱ.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1. 고려 사항

▣ **범죄의 발생 빈도와 그 사회적 영향 정도, 법정형과 죄질,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적인 관심도,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대상을 결정함**

● 선고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행위 유형, 법정형과 죄질,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범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범죄를 참조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설정 대상으로 포함

2. 설정 범위

가. 개요

▣ **기존 설정 범죄에 더하여, 다음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기로 함**

나.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4항 제외),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사형 / 무기 / 10년↑
②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내지 제13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년↑

●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영업범에 대한 처벌 규정임

-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 대상범죄와 그 성격이 같음
- 현행 양형기준 대유형 4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가액이 일정 액수 이상인 범행을 설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와의 균형상 영업범도 설정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 신설된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2023. 9. 29. 시행)

제58조의2(벌칙)		
①	미성년자에게 대마 수수·제공 또는 대마·대마초종자껍질 흡연·섭취	2년↑
②	상습으로 ①항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 여백)

Ⅲ. 마약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

1.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2. 유형 분류안

가. 논의의 전제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음 ⇨ 양형인자 공통**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음 ⇨ 형량범위 공통**

나. 대유형 분류

▣ **마약류 법률의 체계적 특징**

- 마약류범죄는 ① 제조·재배 등 생산, 수출입, ② 매매·알선 등 유통, ③ 소지·소유 등 점유, ④ 사용·흡입 등 소비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단계별로 파급효과나 행위의 심각성에 차이가 있음
- 마약류는 마약, 향정, 대마 등으로 구분되고 종류별로 약리 작용, 의존 및 중독성 등 그 피해의 중대성이 다름

▣ **대유형의 구분**

●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① 투약·단순소지 등, ② 매매·알선 등, ③ 수출입·제조 등으로 대유형을 분류하되, 고액의 마약사범의 경우 ④ 대량범(∵ 특정범죄가중법에 별도 규정)을 독립시켜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 → 총 4개의 대유형으로 구분함

다. 중유형 및 소유형 분류

▣ 개요

● 각 대유형 내에서는 환각물질, 대마, 향정 가.목 내지 마.목, 마약과 같이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세부 유형을 나누되, 매매·알선 등 대유형과 수출입·제조 등 대유형에서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 법정형이 현저하게 높음)

▣ 대유형 2(매매·알선 등)를 성인 대상 마약범죄 중유형(2-가)과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중유형(2-나)으로 구분

●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대유형 2-나)' 유형을 신설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양형기준 설정 필요

●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를 법정형 순서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음

순번	구분	해당법조	법정형
1	환각물질 판매·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3년↓
2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1항	2년↑
3	상습 대마 제공 등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2항	3년↑
4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무기 또는 5년↑
5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

● 미성년자 대상 환각물질 범죄는 성인 대상 환각물질 범죄와 적용 법조(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가 동일하나, 미성년자 대상 매매·수수 등 범죄를 별도의 중유형(2-나)으로 설정하는 이상 미성년자 대상 환각물질 범죄도 2-나 유형에 포섭시킴

● 대유형 2 분류안

- 기존 양형기준의 대유형 2 '매매·알선 등' 양형기준표 → 대유형 2 '가. 일반 매매·알선 등'으로 이동하고 기존 유형 분류 유지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매매·수수 등 →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1항) 및 그 상습범(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2항)을 제2유형으로 분류

02 | 매매·알선 등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2	대마			
3	마약, 향정 등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대유형 3(수출입·제조 등)에서 대마수출입 등 범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유형 재분류

● 대마수출입 등 범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중함에도 대마의 중독성이 심하

지 않은 점을 중시하여 그보다 법정형이 더 가벼운 대마제조, 향정 다.목과 같은 제2유형으로 묶여 있었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대마수출입에 관한 제58조 제1항 제5호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결정(2022. 3. 31. 2019헌바242 전원재판부 결정)을 함

- 대마의 '유통'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범죄행위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고, 유통행위 중에서도 '수출입' 행위는 대마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대마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

●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대마수출입 범죄의 유형을 법정형에 따라 재분류하여 제3유형으로 한 단계 높임으로써 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도록 함

03 | 수출입·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2	대마제조, 향정 다.목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대유형 4(대량범)에 영업범 추가

● 영업범의 경우, 대유형 4에서 법정형이 동일한 소유형으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함

●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2항의 영업범(3년↑)은 대유형 4의 제1유

형으로,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1항의 영업범(사형, 무기 또는 10년↑)은 제3유형으로 분류

▣ 대유형 4(대량범)에 추가 양형 구간(제4유형) 신설

● 최근 단일 사건으로 적발되는 밀수 마약류의 규모가 거대화되고 마약류 압수량도 증가 추세이며, 마약류 가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량범(제3유형)의 수와 형량도 대폭 증가[3)]

- 4-3유형 단일·동종경합범 사건 수와 형량: 2021년 18명, 평균 88.0월 → 2022년 65명, 평균 105.1월

- 4-3유형 이종경합범 포함 전체 사건 수와 형량: 2021년 18명 88.0월 → 2022년 67명 105.6월

● 4-3유형의 마약류 가액에 따른 형량 추이에 비추어 보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새로운 구간을 신설한다면 그 기준으로 **10억 원**이 적절

- 4-3유형의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음

  ▪ 4-3유형 전체 평균 94.72월 < 10억 원 이상의 평균 129.6월, 가장 낮은 형량 96월)[4)]

  ▪ 10억 원 상당은 필로폰 약 10kg, 헤로인 약 12kg에 해당, 필로폰 10kg은 약 33만회 투약 분량(1회 투약 분량 0.03g)

- 최근 필로폰 10kg(도매가 기준 환산시 10억 원) 이상 밀수 사례들이 단속되고 있음

  ▪ 마약류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상 5,000만 원 이상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

3) 「2022년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제1권 634쪽, 636쪽,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4) 21쪽 참조

으나, 현재 가액 기준액 500만 원과 5,000만 원은 필로폰 도매가 기준 환산시 50g과 500g 정도임

- 조세범죄 양형기준에서도 20배(200억 원/10억 원)를 가중한 구간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음

● 이에 ① 4-2유형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4-3유형에 포섭하고, ② 4-3유형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4-4유형(신설)에 포섭하기로 함

- 4-2유형 중 10억 원 이상 ⇨ 4-3유형으로 포섭

- 4-3유형 중 10억 원 이상 ⇨ 4-4유형을 신설

● 대유형 4 분류안

04 |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	제2유형			
3	제3유형			
4	제4유형			

라. 소결

01 |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3	향정 나.목 및 다.목			
4	마약, 향정 가.목 등			

02 | 매매·알선 등

가. 일반 매매·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3	마약, 향정 가.목 등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2	대마			
3	마약, 향정 등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03 | 수출입·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2	대마제조, 향정 다.목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04 |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	제2유형			
3	제3유형			
4	제4유형			

(이하 여백)

Ⅳ. 마약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1. 고려사항

▣ 권고 형량범위 설정 방식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함
-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2. 투약 · 단순소지 등(대유형 1)

가. 유형의 정의

- 양형기준안 [유형의 정의] 참조

나. 형량 분포[5)]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월)
		3	4	6	8	9	10	12	14	15	16	18	20	22	24	26	30	36	48		
제1유형	수	0	7	17	17	0	22	32	5	0	2	15	1	0	4	0	0	0	0	122	11.13
	비율	0.0	5.7	13.9	13.9	0.0	18.0	26.2	4.1	0.0	1.6	12.3	0.8	0.0	3.3	0.0	0.0	0.0	0.0	100.0	
제2유형	수	1	6	30	52	0	34	40	3	0	1	9	1	0	3	0	1	0	0	181	9.86
	비율	0.6	3.3	16.6	28.7	0.0	18.8	22.1	1.7	0.0	0.6	5.0	0.6	0.0	1.7	0.0	0.6	0.0	0.0	100.0	
제3유형	수	1	3	36	41	1	83	103	16	1	6	33	3	2	18	1	2	2	0	352	12.09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월)
		3	4	6	8	9	10	12	14	15	16	18	20	22	24	26	30	36	48	
	비율	0.3	0.9	10.2	11.6	0.3	23.6	29.3	4.5	0.3	1.7	9.4	0.9	0.6	5.1	0.3	0.6	0.6	0.0	100.0	
제4유형	수	0	0	3	5	0	8	43	1	0	0	27	0	0	11	0	6	5	1	110	16.60
	비율	0.0	0.0	2.7	4.5	0.0	7.3	39.1	0.9	0.0	0.0	24.5	0.0	0.0	10.0	0.0	5.5	4.5	0.9	100.0	
전체	**수**	**2**	**16**	**86**	**115**	**1**	**147**	**218**	**25**	**1**	**9**	**84**	**5**	**2**	**36**	**1**	**9**	**7**	**1**	**765**	**12.06**
	비율	**0.3**	**2.1**	**11.2**	**15.0**	**0.1**	**19.2**	**28.5**	**3.3**	**0.1**	**1.2**	**11.0**	**0.7**	**0.3**	**4.7**	**0.1**	**1.2**	**0.9**	**0.1**	**100.0**	

다. 검토

● 다음과 같이 형량범위를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8월 -	~~10월 2년~~ 1년 - 2년6월	~~1년 3년~~ 2년 - 5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 4년	~~2년 4년~~ 3년 - 6년

● 전체 사건 대부분 권고 형량범위 안에 고르게 분포

● 1-1유형(환각물질)의 경우, 강한 처벌보다는 치료 및 교화, 재범 방지가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현행 유지

● 1-2, 3, 4유형의 경우, 마약범죄의 높은 재범률 및 최근 확산 추세를 볼 때, 소위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라 불리는 대마 범죄부터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하고, 각 유형 사이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상향

5)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선고된 대유형 1(투약·단순소지 등)의 단일 및 동종경합범 통계(「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Ⅰ」 124쪽,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3. 일반 매매 · 알선 등(대유형 2 중유형 가)

가. 유형의 정의

● 양형기준안 [유형의 정의] 참조

나. 형량 분포[6)]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4	5	6	8	10	12	14	15	16	18	20	22	24
제1유형	수	2	0	6	5	5	7	1	0	1	1	0	0	0
	비율	7.1	0.0	21.4	17.9	17.9	25.0	3.6	0.0	3.6	3.6	0.0	0.0	0.0
제2유형	수	1	1	12	24	24	119	15	2	7	79	5	3	41
	비율	0.3	0.3	3.1	6.3	6.3	31.2	3.9	0.5	1.8	20.7	1.3	0.8	10.7
제3유형	수	0	0	0	0	0	0	0	0	0	3	0	0	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1.1	0.0	0.0	0.0
제4유형	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수**	**3**	**1**	**18**	**29**	**29**	**126**	**16**	**2**	**8**	**83**	**5**	**3**	**41**
	비율	**0.4**	**0.1**	**2.6**	**4.2**	**4.2**	**18.4**	**2.3**	**0.3**	**1.2**	**12.1**	**0.7**	**0.4**	**6.0**

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월)
		28	30	34	36	42	48	54	60	72	84		
제1유형	수	0	0	0	0	0	0	0	0	0	0	28	9.5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제2유형	수	1	23	0	12	5	3	1	2	2	0	382	17.51
	비율	0.3	6.0	0.0	3.1	1.3	0.8	0.3	0.5	0.5	0.0	100.0	
제3유형	수	0	162	1	65	9	16	0	15	0	2	273	34.81
	비율	0.0	59.3	0.4	23.8	3.3	5.9	0.0	5.5	0.0	0.7	100.0	
제4유형	수	0	0	0	0	0	0	0	2	0	0	2	60.0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전체	**수**	**1**	**185**	**1**	**77**	**14**	**19**	**1**	**19**	**2**	**2**	**685**	**24.20**
	비율	**0.1**	**27.0**	**0.1**	**11.2**	**2.0**	**2.8**	**0.1**	**2.8**	**0.3**	**0.3**	**100.0**	

6)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선고된 대유형 2(매매·알선 등)의 단일 및 동종경합범 통계로, 성인 및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Ⅰ」 187쪽, 188쪽,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다. 검토

● 다음과 같이 형량범위를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월 - ~~10월~~ 1년	~~8월 1년 6월~~ 10월 - 2년	~~10월 2년~~ 1년6월 - 4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2년	1년 - ~~2년~~ 3년	~~1년6월 4년~~ 2년6월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6년	~~4년 7년~~ 5년 - 8년	~~5년 8년~~ 7년- 10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6년	~~7년 11년~~ 8년 - 12년	~~9년 14년~~ 10년 이상, 무기

● 전체 사건 대부분 권고 형량 안에 고르게 분포

● 그러나 매매·알선 등 유형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양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범죄유형의 특성, 법정형 동일·유사 범죄와의 균형, 체계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상향함

● 2-가-4유형의 경우, 양형 통계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2건)밖에 없지만, 범죄의 법정형(10년↑), 죄질이 특히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형량범위를 조정함

4.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대유형 2 중유형 나)

가. 유형의 정의

● 양형기준안 [유형의 정의] 참조

나. 형량 분포

● 3.의 나.와 같음(성인 및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가 모두 포함)

다. 검토

● 다음과 같이 형량범위를 설정함이 타당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1년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마약, 향정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2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 - 10년	8년 - 13년	10년 이상, 무기

● 전체 마약사범 중 연령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만에 2.4배로 증가하였고, 2022년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59.7%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심각[7)]

- 특히 10대 청소년들도 SNS, 해외직구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 급증

● 나-1유형(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3년↓)은, 가-1유형에 포함되는 범죄(3년↓, 5년↓) 일부와 적용법조가 동일함. 따라서 법정형에 비추어 가-1유형보다 높게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는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가-1유형보다 낮게 설정하기도 어려움 → 감경, 기본영역은 같게, 가중영역은 법정형 상한까지 설정

● 마약류 공급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유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형량범위를 설정

- 나-2유형과 법정형 동일(2년↑) 범죄 권고 형량범위

7) 2023. 2. 대검찰청 발표 통계

▪ 방화범죄(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통화 위조·변조 등)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6년

- 나-3유형은 가-3유형과, 나-4유형은 가-4유형과 각각 법정형이 같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엄벌 필요성에 비추어 형량범위 상한을 보다 상향함

5. 수출입 · 제조 등(대유형 3)

가. 유형의 정의

● 양형기준안 [유형의 정의] 참조

나. 형량 분포[8)]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월)
		4	6	8	10	12	14	18	24	30	36	42	48	60	72	84	132	144		
제1유형	수	2	4	2	6	4	1	5	5	0	1	0	1	0	0	0	0	0	31	14.97
	비율	6.5	12.9	6.5	19.4	12.9	3.2	16.1	16.1	0.0	3.2	0.0	3.2	0.0	0.0	0.0	0.0	0.0	100.0	
제2유형	수	0	1	0	1	4	0	1	0	81	16	5	5	3	1	0	0	0	118	32.12
	비율	0.0	0.8	0.0	0.8	3.4	0.0	0.8	0.0	68.6	13.6	4.2	4.2	2.5	0.8	0.0	0.0	0.0	100.0	
제3유형	수	0	0	0	0	0	0	0	0	61	44	2	19	20	7	2	1	1	157	41.77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38.9	28.0	1.3	12.1	12.7	4.5	1.3	0.6	0.6	100.0	
제4유형	수	0	0	0	0	0	0	0	0	0	0	0	0	8	0	0	0	0	8	60.0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전체	**수**	**2**	**5**	**2**	**7**	**8**	**1**	**6**	**5**	**142**	**61**	**7**	**25**	**31**	**8**	**2**	**1**	**1**	**314**	**35.96**
	비율	**0.6**	**1.6**	**0.6**	**2.2**	**2.5**	**0.3**	**1.9**	**1.6**	**45.2**	**19.4**	**2.2**	**8.0**	**9.9**	**2.5**	**0.6**	**0.3**	**0.3**	**100.0**	

다. 검토

● 다음과 같이 형량범위를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2년	~~10월 - 2년~~ 1년 - 3년	~~1년6월 - 3년~~ 2년- 4년
2	대마제조, 향정 다.목	~~1년 - 3년~~ 10월 - 2년	~~2년 - 4년~~ 1년 - 3년6월	~~3년 - 6년~~ 2년 - 5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2년6월 - ~~5년~~ 6년	~~4년 - 7년~~ 5년 - 8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6년	~~7년 - 11년~~ 8년 - 12년	~~9년 - 14년~~ 10년 이상 무기

● 3-1유형의 경우, 하한 이탈 사건이 일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거나 수입한 마약류가 통관 과정에서 전량 압수되는 등 개별 사안의 특수성 반영된 것 → 형량범위 하향 곤란

● 밀수입 범행은 현실적으로 적발률이 낮아 일반 예방을 위해 형량 강화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형량범위 상향

● 3-2유형의 경우, 기존에 대마수출입 범행(5년↑)이 포함되어 있다가 3-3유형으로 이동한 결과 법정형 1년↑ 범죄만 남게 되어 법정형이 대폭 변경(1년↑ or 5년↑ → 1년↑)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형량범위를 하향하되, 법정형 동일·유사 범죄 권고 형량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함

-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1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4	**보복목적 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 공무집행방해범죄(공용물무효·파괴) (1년~10년)

8)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선고된 대유형 3(수출입·제조 등)의 단일 및 동종경합범 통계(「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Ⅰ」 229쪽,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3-4유형의 경우, 양형통계는 5년이 선고된 사례만 있지만, 건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크지 않음. 범죄의 법정형(10년↑)과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죄질이 나쁜 점에 비추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형량범위를 조정함

6. 대량범(대유형 4)

가. 유형의 정의

● 양형기준안 [유형의 정의] 참조

나. 형량 분포[9)]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월)
		18	24	30	36	42	48	54	60	66	72	84	96	108	120	132	144	180	192		
제1유형	수	2	4	1	12	0	8	0	1	1	1	0	0	0	1	0	0	0	0	31	41.81
	비율	6.5	12.9	3.2	38.7	0.0	25.8	0.0	3.2	3.2	3.2	0.0	0.0	0.0	3.2	0.0	0.0	0.0	0.0	100.0	
제2유형	수	0	0	0	0	6	13	1	21	0	6	7	4	1	1	0	0	0	0	60	63.70
	비율	0.0	0.0	0.0	0.0	10.0	21.7	1.7	35.0	0.0	10.0	11.7	6.7	1.7	1.7	0.0	0.0	0.0	0.0	100.0	
제3유형	수	0	0	0	0	0	3	0	13	0	10	11	16	3	8	2	5	3	1	75	94.72
	비율	0.0	0.0	0.0	0.0	0.0	4.0	0.0	17.3	0.0	13.3	14.7	21.3	4.0	10.7	2.7	6.7	4.0	1.3	100.0	
전체	**수**	**2**	**4**	**1**	**12**	**6**	**24**	**1**	**35**	**1**	**17**	**18**	**20**	**4**	**10**	**2**	**5**	**3**	**1**	**166**	**73.63**
	비율	**1.2**	**2.4**	**0.6**	**7.2**	**3.6**	**14.5**	**0.6**	**21.1**	**0.6**	**10.2**	**10.8**	**12.0**	**2.4**	**6.0**	**1.2**	**3.0**	**1.8**	**0.6**	**100.0**	

다. 검토

● 다음과 같이 형량범위를 수정

9)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선고된 대유형 4(대량범)의 단일 및 동종경합범 통계(「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Ⅰ」 271쪽,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9년
2	제2유형	3년6월 - ~~6년~~ 7년	~~5년 - 9년~~ 6년 - 10년	~~7년 - 11년~~ 8년 - 13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15년
4	제4유형	8년 - 12년	10년 - 15년	13년 이상, 무기

- 전체 사건 대부분 권고 형량범위 안에 고르게 분포
- 마약범죄의 급격한 증가 및 대량화 추세, 대량범 양형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점 등을 고려, 권고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상향하되, 일반범과 대량범 사이 역전이 없도록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정함
- 신설하는 제4유형에 해당하는 사건(2020~2022년)의 통계[10]상 형량범위는 징역 8년 ~ 16년이므로, 감경영역 하한을 징역 8년으로 설정하고, 죄질이 불량한 가중영역의 경우 형량범위를 '13년 이상, 무기'로 설정

단위: 명, %

양형기준(구분)			형량(월)				전체	평균(월)
			96	120	144	192		
대량범	제3유형	수	2	1	1	1	5	129.6
		비율	40.0%	20.0%	20.0%	20.0%	100.0%	

(이하 여백)

10) 위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선고된 대유형 4(대량범) 통계의 제3유형에서 마약가액 10억 원 이상인 5건 통계

V. 마약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1. 양형인자 중 수정 부분

가. 특별가중인자

1)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정의규정 수정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을 사용, 투약, 제공하거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류를 이용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이를 정의규정에 명확히 규정함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대유형 1, 2, 3) ⇨ 신설

▣ 논의 배경

- 마약범죄는 수량 및 가액에 따라 죄질에 차이가 있는데,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마약류 가액이 높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로 가중처벌하고 있고, 이는 대유형 4(대량범)에 반영되어 있음
- 다음의 경우에 가중인자 신설 검토 필요

- ①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11] 제1항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행위

유형 중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 등이 대량범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행위유형 중 대마수출입 등(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1군 임시마약 매매·알선 등(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8호)이 대량범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③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질(마약, 향정 이외 부분)이 대량범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④ 마약류를 합산한 가액이 대량범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①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행위유형 중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 등 → 가중인자 신설

● 연혁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

① 마약의 매수 가운데 '영리매수'는 마약의 대량확산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신적·육체적 황폐화를 통하여 영리를 도모한다는 점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마약류시장의 특성상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은 일반범죄의 영리범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 반면에 **'단순매수'는 기본적으로 수요의 측면에 해당되고 마약의 유통구조상 최종단계를 형성하므로 마약확산에의 기여도와 그 행위의 구조,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등 죄질에 있어서 영리매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특가법 조항은 그나마 존재하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의 단순범과 영리범의 구별조차 소멸시켜 불법의 정도, 죄질의 차이 및 비난가능성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죄질과 책임에 따라 적절하게 형벌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과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된다.
② 마약의 판매목적소지는 마약의 매도행위에 대한 예비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한 것인바, 마약의 매도행위는 영리의 추구를 그 핵심적 성질로 하므로 **비영리의 단순판매목적소지는 그 행위의 발생 개연성 및 마약확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할 것인데,** 위 특가법 조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까지 영리범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지나친 남용이라 할 것이다.

11)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2004. 10. 16. 개정 특정범죄가중법 → ‘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 전체(영리매수나 매도 포함)를 제외

◇ 개정이유
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관련 범죄중 단순범죄의 경우 가중처벌대상에서 제외(법 제11조제1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관련 범죄중 단순범죄인 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가중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제조 등에 관한 죄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의 마약류 가액이 대량범에 이르는 경우 → 대량범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마약류 매도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 매매목적 소지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를 가중인자로 규율 필요

▣ ②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행위유형 중 대마수출입 등(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1군 임시마약 매매·알선 등(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8호) → 가중인자 신설

● 위 각 행위유형은 대마, 1군 임시마약에 관한 죄로서 마약, 향정에 관한 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나, 대량범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어 특별가중인자로 봄이 상당

▣ ③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질(마약, 향정 이외 부분) → 가중인자 신설

● 연혁

- 2004년 이전에는 ‘마약’만 대량범 가중처벌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

> 마약류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의 측면이나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있어서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범과 달리 마약사범에 대하여만 가중을 하여야 할 정도로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범죄의 실태와 검찰에서의 기소율이나 형사재판의 결과 등을 감안하고 마약류 규제법규의 연혁을 살펴보면 마약사범만을 가중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특가법 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매수와 판매목적소지의 마약사범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 2004. 10. 16. 개정 특정범죄가중법 → '마약, 향정' 대량범 가중처벌

● '마약, 향정에 관한 죄' 이외 대마, 마약 원료 식물, 향정 원료 식물, 임시마약 등의 가액이 대량범에 이르는 경우 → 대량범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가중인자로 규율 필요

▣ ④ 취급한 마약류를 합산한 가액이 대량범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가중인자 신설 ×

●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이 높더라도 다수범 가중에 의해 3개 범죄(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까지만 가중되어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 有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취급한 마약류를 합산한 가액이 대량범 기준을 넘는 경우 가중인자로 처리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난점이 있음

- 동종경합범 가중의 원칙적인 모습은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동종경합범을 가중인자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가중인자로 적용하는 것은 단일범의 경우에 비해 과중한 형량범위를 권고하게 되어 부당하고, 특정 유형을 선택하는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구체적 타당성에 반할 여지가 있음

- 동종경합범을 가중인자로 처리한 경우가 다수범 처리를 한 경우보다 반드시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지도 않음[예: LSD 20장(향정 가.목)

매수 3회의 경합범 사안 → 기존 양형기준 가중인자 5년 - 8년 < 다수범 처리 4년 - 12년 10월, 수정 양형기준 가중인자 7년 - 10년 < 다수범 처리 5년 - 14년 8월]

- 동종경합범과 다수범 처리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이중평가에 해당

●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다수범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 정의규정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 중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나 매매목적, 매매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8호의 죄)를 범하였고,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이외의 원료 등에 관한 죄)를 범하였고, 그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가액을 특정하기 보다는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열어둘 필요

- 대량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추징금 심리과정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드러나는 경우는 많아 심리 가능

- 그러나 추징액의 산정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대량범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을 기준으로 하는 등 기준에 다소 차이

- 구체적으로 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최근 마약범죄 대량화 동향을 반영하여 특별가중인자를 신설하되 일응 특정범죄가중법의 대량범의 기준가액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3)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대유형 2, 3) ⇨ 신설

▣ 논의 배경

- 최근 다크웹, SNS 등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마약 매매 범행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온라인의 익명성, 접근 용이성으로 마약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침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마약 제공도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킴

▣ 매매·알선 등(대유형 2), 수출입·제조 등(대유형 3)에 신설

- 투약·단순소지 등(대유형 1) → 제외
  - 투약·소지·소유 등은 마약류 수요자의 범행으로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므로, 위 인자와 어울리지 않음
  -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등 제공은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에 도움을 주는 범행으로서 마약류 자체를 취급하는 범행과 구별되므로, 위 인자와 어울리지 않음
- 대량범(대유형 4) → 제외
  - 영업범 등 구성요건 자체로 위 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多
  -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 등은 대량범의 구성요건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SNS(Social Network Service), 다크웹(Dark Web)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이용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에게 마약류가 든 음식을 나누어 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1, 3유형)(대유형 4)

⇨ 신설

- 영업범의 경우 4-1유형(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2항, 3년↑) 및 4-3유형(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1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으로 분류되어 있음
-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특정범죄가중법은 마약류 가액으로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반면, 마약거래방지법은 그러한 규정이 없음
  - 4-1유형의 영업범(법정형 3↑)을 4-2유형(법정형 7↑)과 같은 유형으로 묶는 것은 그 죄질의 차이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4-3유형의 영업범을 4-4유형과 같이 묶는 것도 통계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음
  - 4-1유형의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와 4-3유형의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여 다른 유형과 균형 도모

나. 특별감경인자

1)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신설

▣ 하급심 실무에서 감경인자로 참작

- 대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사례 有
  - 대유형 1(투약·단순소지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허브

액상을 흡연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사례 등

- 대유형 2(매매·알선 등): 수령한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사례 등
- 대유형 3(수출입·제조 등): 대마가 합법인 캐나다에서 입국하면서 국내에서 대마가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사례 등
- 대유형 4(대량범):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사례 등

●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약 복용, 판매, 수입 등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의 경우 등

▣ 대마수출입 유형 재분류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 확보 필요

● 대마수출입에 해당하는 사건(동종경합 포함)의 아래 양형 통계[12]를 보면, 징역 2년6월과 3년이 대부분이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함

단위: 명, %

선고내역		형량(개월)							전체	평균(개월)
		18	30	36	42	48	60	72		
실형	수	0	20	8	7	7	3	1	46	38.48
	비율	0.0	43.5	17.4	15.2	15.2	6.5	2.2	100.0	
집행유예	수	1	94	17	0	0	0	0	112	30.80
	비율	0.9	83.9	15.2	0.0	0.0	0.0	0.0	100.0	
전체	**수**	1	114	25	7	7	3	1	158	**33.04**
	비율	0.6	72.2	15.8	4.4	4.4	1.9	0.6	100.0	

● 대마수출입의 기본영역이 '2년 - 4년'에서 '5년 - 8년'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감경인자

12) 2020년 ~ 2022년 선고된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수출입·제조 등의 제2유형) 중 죄명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에 해당하고 법조항이 제5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단일 및 동종경합 사건 통계(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공)

추가 필요

2)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대유형 2-가) ⇨ 정의규정 수정

-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되는 경우가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범행임을 정의규정에 명확하게 하여 해당 인자 적용을 엄격하게 함

- 정의규정

>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3)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대유형 3) ⇨ 신설

- 마약류관리법의 '수입'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함(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규정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9헌바242 전원재판부 결정)

-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양형인자 필요

  - 국내유통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와 단순히 자신이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구별

  - 자기 투약 등을 위해 국내 유통된 마약을 구매한 경우와 해외에서 구매해 온 경우, 가벌성의 차이에 비해 법정형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 有

- 대유형 2에 유사한 인자 有(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정의규정

수출입 또는 제조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4) 중요한 수사협조 ⇨ 정의규정 수정

●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마약범죄보다 무거운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에 한정함

●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대유형 2-가), 대량범(대유형 4-4)을 각 신설하였으므로, 이를 정의규정에 반영할 필요 → 다음과 같이 수정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 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각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 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일반가중인자

1)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신설

● 사기, 횡령·배임, 공문서, 식품·보건범죄 등 다수 범죄의 일반가중인자

● 마약범죄의 은밀성, 적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일반가중인자로 신

설하여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억제함이 타당

2.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대유형 2-나)의 양형인자

가. 개요

▣ **일반 매매·알선 등(대유형 2-가)을 기초로 양형인자표 구성**

- 신설된 유형이므로 양형인자표를 새로 설정함
- 일반 매매·알선 등(대유형 2-가)과 행위유형이 유사하므로 이를 대부분 차용하되, 일반 매매·알선 등(대유형 2-가)의 인자와 달리 정할 부분을 위주로 검토

나. 양형인자 검토

1) 상습범인 경우 ⇨ '(1, 2유형)'으로 한정

▣ **1, 2유형만 특별가중인자로 '상습범인 경우'를 설정**

- 1유형은 상습범 처벌규정이 없지만, 1유형, 2-가 유형의 경우에도 상습범을 환각물질의 특별가중인자로 삼은 것과의 균형
- 3유형의 상습범은 별도 유형(4유형)으로 가중하고 있으므로 제외

2)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제외

-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대유형 2-나) 유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등을 제공한 범행으로서, 미성년자가 마약류 등을 매수한 범행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3. 양형인자표

가. 투약·단순소지 등(대유형 1)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일반 매매·알선 등(대유형 2-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대유형 2-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인자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수출입·제조 등(대유형 3)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마. 대량범(대유형 4)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1, 3유형)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이하 여백)

Ⅵ. 마약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 상습범인 경우 ○ 대량범인 경우 또는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매매·알선 등, 수출입·제조 등)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매매·알선 등)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수출입·제조 등) ○ 중요한 수사협조 ○ 자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단순소지 유형)

(이하 여백)